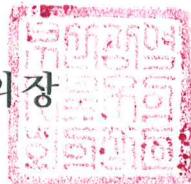


부산광역시 북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문

부산광역시 북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2월 3일

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



1. 조례명 : 부산광역시 북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

2. 제정이유

지방자치법 제9조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용어의 정의 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적용범위 (안 제3조)
- 다. 구의 책무 (안 제4조)
- 라. 기본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(안 제5조~제6조)
- 마. 협력체계 구축 (안 제7조)
- 바. 예산범위 등 (안 제8조~제9조)

4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[참조 : 의회사무국장,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 33(구포동), 전화 051-309-4092, FAX 051-309-4099]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붙임 : 부산광역시 북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1부.

부산광역시 북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횡단보도"란 「도로교통법」 제10조(도로횡단)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.
2. "투광기"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이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「도로교통법」 제10조(도로횡단)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설치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.

제4조(구의 책무) 부산광역시 북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를 위한 시책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.

제5조(기본계획수립) 구청장은 제2조의 따라 예산범위에서 투광기 설치와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설치 · 유지 · 관리하여야 한다.

제6조(실태조사) 구청장은 매년 횡단보도 설치 현황을 파악하여 횡단보도에 대

한 야간보행자 안전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5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7조(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횡단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기 위하여 경찰서, 교육지원청,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8조(예산범위)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"횡단보도 야간 보행자" 횡단안전 수립을 위한 제5조, 제6조 및 제7조 등의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9조(설치 등) 이 조례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